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72
----------	------

2023년 11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11월 2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
-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하여 녹색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 추진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 □ 필요성

-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육성이 필요
- 서울시 녹색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분야 초기창업자 등 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잠재력 있는 녹색 벤처·창업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조성년도 (운용사)	존속기간 (투자/회수)	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총 투자집행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총 투자기업 수)
계			805	90	128 (569.7)	15 (69)
1호	2011년 (서울투자파트너스)	7년 (4년/3년)	160	20 (SBA 출연금)	40 (138.7)	5 (16)
2호	2012년 (다에스씨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00	20 (SBA 출연금)	20.5 (96.4)	4 (19)
3호	2013년 (메디지인베스트먼트)	11년 (3년/8년)	200	20 (市중소기업육성기금)	45 (207.1)	3 (20)
4호	2017년 (코메스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45	10 (SBA 가금)	22.5 (127.5)	3 (14)
5호	2023년 (클라리코인베스트먼트)	8년 (3년/5년)	200	20 (市중소기업육성기금 3호 펀드 회수금)	출자 준비중 (‘23.12월 개시 예정)	

□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 계획

○ 추진 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투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市 녹색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 녹색산업지원센터 IR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 등 녹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벤처캐피탈을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녹색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 출자금액 및 재원: 20억원, 기후대응기금

○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 계획

- 펀드 명: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
- 조성규모: 200억원(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결성예정액의 지정출자비율), 민간출자자 등)
- 조성형태: 벤처투자조합
- 투자대상: 서울소재 녹색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 창업후 7년 이내 창업기업: 출자금 총액의 40% 이상
    - 청년(만39세 이하) 창업기업: 출자금 총액의 20% 이상
  - 서울 소재 녹색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이내): 서울시 출자금의 50% 이상
- 운용기간: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3~4년, 회수 4~5년)
- 소요예산: 20억원 (기후대응기금)

(단위 : 억원)

사업명	'24년	'25년	'26년	비고
녹색기업 창업펀드(제6호)	12	8	-	분할납부 방식 펀드 출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

### 가. 개요

- 본 출자동의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20억원을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이하 “녹색 펀드”)에 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sup>1)</sup>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대한 기후대응기금 출자 계획〉

(단위: 억원)

사업명	'24년	'25년	'26년	비고
녹색기업 창업펀드(제6호)	12	8	-	분할납부 방식 펀드 출자

####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총괄 현황('23년 9월 기준)〉

펀드별 조합		조성액	존속 기간	市 투자 회수금	녹색기업 투자현황	
					기업수	투자액
녹색1호 (청산완료)	서울투자 초기&녹색 벤처조합 (SBA 출연금 출자)	160억 (SBA 20억)	'11.5~ '18.5.	24.5억원 (SBA)	5	40억원
녹색2호 (청산완료)	KU-DSC 드림제1호 그린투자조합 (SBA 출연금 출자)	100억 (SBA 20억)	'12.7~ '20.7.	37억원 (SBA)	4	20.5억원
녹색3호 (청산중)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 사다리 창업투자조합 (SBA 민간위탁 관리)	200억 (市 20억)	'13.9~ '24.9.*	21.6억원 (서울시)	3	45억원
녹색4호 (회수중)	코메스 2017-1 스타트업그린 투자조합 (SBA 기금 출자)	145억 (SBA 10억)	'17.9~	진행중 (SBA)	3	22.5억원
녹색5호	CCVC 코리아임팩트펀드 VI (녹색3호 회수금 재출자)	200억 (市 20억)	출자 준비중(~23.12.)			
<b>녹색6호</b>	<b>시의회 출자 동의안 제출</b>					
총 계		805억 (市SBA 70억)			15	128억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나. 검토의견

### 1) 관련 법령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에 대해 출자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서는 시장의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기후대응기금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70조제5호 2)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녹색 펀드 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2)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1~5호) 현황

- 녹색 펀드는 금융권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서울 녹색 중소기업 중에서 담보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 기술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2) 「탄소중립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 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이는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sup>3)</sup>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자 등의 출자금으로 조성되어 서울산업진흥원 (이하 “SBA”) 내 투자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23년 기준)〉

(단위: 억원)

펀드별 조합		조성액	조성일	운용기간	투자기업수 및 투자액		
					계	녹색기업	IT/기타
녹색 1호	서울투자 초기&녹색 벤처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60억 (SBA 20억)	’11.5.30.	7년 (4년투자, 3년회수)	16개사	5	11
					138.7억	40	98.7
녹색 2호	KU-DSC 드림제1호 그린투자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00억 (SBA 20억)	’12.7.12.	8년 (4년투자, 4년회수)	19개사	4	15
					96.4억	20.5	75.9
녹색 3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SBA에 민간위탁 관리)	200억 (서울시 20억)	’13.9.16.	11년 (3년투자, 8년회수)	20개사	3	17
					207.1억	45	162.1
녹색 4호	코메스 2017-1 스타트업 그린 투자조합 (SBA 기금으로 출자)	145억 (SBA 10억)	’17.9.5.	8년 (4년투자, 4년회수)	14개사	3	11
					127.4억	22.5	104.9
총 계		605억 (市SBA 70억)	-	-	69개사	15	54
					569.6억	128	441.6

○ 녹색 펀드 1호와 2호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60억원(SBA 출연금 20억원)과 100억원(SBA 출연금 2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청산이 완료 (시 투자 회수금 각 24.5억원, 37억원)된 상태임.

3호와 4호는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2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과 145억원(SBA 기금 1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현재 청산 및 회수 중이며, 5호는 200억원 규모로 2023년에 출자할 계획임.

이 중 3호는 존속 기한이 2021년 9월까지이나, 해산총회에서 청산 기한을 3년 연장(’24.9.15.)하였음.

3)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176호, ’11.9.9.



서울시는 녹색 펀드 5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2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고 이는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녹색 펀드는 전문성이 높은 펀드운용사(GP, General Partner)를 공모로 선정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과 장기적·안정적인 자금 조달 등을 수행하게 하며, 운용 기간은 7년에서 11년까지(3~4년 투자, 3~8년 회수)임.

'23년 기준으로 총 69개 기업에 569억 6천만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중 서울 소재 15개 기업에 128억원(22.5%)이 투자되었음.

운용 기간이 종료된 펀드(1~2호)의 회수금액은 402억원으로, 펀드 조성액(260억원) 대비 수익률은 54.6%, 서울시(SBA) 분배금은 61억 7천만원임(출자액 대비 수익률 54.7%).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투자운용사 및 회수내역('23년 기준)〉

(단위: 억원)

펀드별 조합 [투자운용사]	조성액	총투자 금액	총회수 금액	市 투자 회수		
				투자	회수	수익
녹색 1호 서울투자 초기&녹색벤처조합 [서울투자파트너스(주)]	160	138.7	196.3	20	24.7	4.7
녹색 2호 KU-DSC 드림 제1호 그린투자조합 [DSC인베스트먼트(주)]	100	96.4	205.7	20	37	17
녹색 3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메디치인베스트먼트(주)]	200	207.1	243.9	20	21.6	1.6
녹색 4호 코메스 2017-1 스타트업그린 투자조합 [코메스인베스트먼트(주)]	145	127.4	38.1	10	2	-
<b>계</b>	<b>605</b>	<b>569.6</b>	<b>684</b>	<b>70</b>	<b>85.3</b>	<b>23.3</b>

3) 출자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녹색펀드 조성 자금(2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탄소중립 기본법」 및 「기후대응기금 조례」 등에 따른 것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음.

- 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녹색 펀드 제6호는 서울시(기후대응기금, 20억원)와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 및 민간출자자 등의 재원으로 서울 소재 녹색 분야 창업기업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 기간은 8년 이상임. 투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청년 기업 등이고, 서울 소재 녹색기업 (창업기업·벤처기업)에는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투자하게 됨.
- 최근 녹색 중소기업들이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경기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출자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펀드의 악용 가능성(고의 폐업 등)이나 기업 선정 형평성(동일인 중복 선정) 등 펀드 운용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본 출자 동의안과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동일 회기(제321회 정례회)에 제출한 점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1472
----------	------

제출년월일 : 2023년 11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
- 나.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하여 녹색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 나. 필요성
-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육성이 필요
  - 서울시 녹색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분야 초기창업자 등 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잠재력 있는 녹색 벤처·창업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조성년도 (운용사)	존속기간 (투자/회수)	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총 투자집행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총 투자기업 수)
			805	90	128 (569.7)	15 (69)
1호	2011년 (서울투자파트너스)	7년 (4년/3년)	160	20 (SBA 출연금)	40 (138.7)	5 (16)
2호	2012년 (디에스케이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00	20 (SBA 출연금)	20.5 (96.4)	4 (19)
3호	2013년 (메디케어베스트먼트)	11년 (3년/8년)	200	20 (市중소기업육성기금)	45 (207.1)	3 (20)
4호	2017년 (코메스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45	10 (SBA 기금)	22.5 (127.5)	3 (14)
5호	2023년 (클라리코인베스트먼트)	8년 (3년/5년)	200	20 (市중소기업육성기금, 3호 펀드 회수금)	출자 준비중 (‘23.12월 개시 예정)	

### 3.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 계획

#### 가.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투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市 녹색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 녹색산업지원센터 IR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 등 녹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벤처캐피탈을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녹색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 나. 출자금액 : 20억원

- 출자재원 : 기후대응기금

## 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 계획

- 펀드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
- 조성규모 : 200억원
  -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결성예정액의 지정출자비율), 민간출자자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소재 녹색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 ▶ 창업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출자금 총액의 40% 이상
    - 청년(만39세 이하) 창업기업 : 출자금 총액의 20% 이상
  - ▶ 서울 소재 녹색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 서울시 출자금의 5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3~4년, 회수 4~5년)
- 소요예산 : 20억원 (기후대응기금)

(단위 : 억원)

사업명	'24년	'25년	'26년	비고
녹색기업 창업펀드(제6호)	12	8	-	분할납 방식으로 펀드에 출자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산업팀 이경희 (☎ 2133-3619)